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8
------------	-----

2012년 6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관 백 호)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운수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렵고 어색한 용어를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나누어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임을 분명히 밝힘(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
- 변화된 주요 시책 반영을 위해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수를 40인에서 50인으로 증원하며,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부위원장의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줄이고, 부위원장을 버스정책분과 위원장이 겸임토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 등 현행 4개 분과위원회에 시민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추가하여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 분과위원회의 자율성 확대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안 제6조제2항)
-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책의 현지성 제고를 위해 시민모니터단을 신설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및 운행 실태 점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내버스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운수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렵고 어색한 용어를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 의견

1) 위원회의 기능 관련(안 제1조의2 및 제2조)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수행하고 있는 “심의·자문” 기능을 “자문” 기능만을 가지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안 제1조의2 및 제2조)

현재 위원회는 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¹⁾ 각 분과위원회는 버스노선 조정 및 표준운송원가 확정 등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과 함께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 버스 재정 지원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요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위원회가 수행하던 중요한 심의기능을 단순 자문기능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고, 시내버스 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1) 버스정책분과위원회,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서비스·시설개선분과위원회, 경영합리화분과위원회

기회가 줄어들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함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확대하고, 차량 개선 등 안전 관련 사항 및 시민제안 등 시민참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2조)

이는 종전에 버스 시설과 관련하여 내·외부 디자인에 국한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전체 버스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버스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버스 이용시민의 실질적 편의개선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 분과위원회 신설 및 기능 재배분 관련 의견(안 제6조)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40인 이내의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시민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50인 이내의²⁾ 총 5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고 기존 분과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는 올해 초 마련된 서울시 방침에 따라³⁾ 시내버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서비스·시설 개선분과위원회’에 수행하던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관련 사항, ‘버스 정책분과위원회’에 수행하던 시내버스 관련 민원 사항, 그리고 신규로 시민참여 관련 사항을 새로이 신설되는 ‘시민혁신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재조정하고 있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2) 위원회의 정원 확대관련 사항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음

3) 버스관리과-1072(2012.1.20), “시민 중심의 버스정책 혁신을 위한 서울 버스정책 거버넌스 기본계획”

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서울시 버스정책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중 각 분과위원회 변동 및 주요 기능 현황

구 분	현 행	개정안
버스정책 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사항 라.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사항 마.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기타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주요사항	가~라. 좌동 현행의 '미항'은 시민혁신분과위원회로 이동 마. 좌동
노선조정 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좌 동
시설 개선 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 체계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사항	가.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제고 관련사항(현행의 '기항'은 시민혁신분과위원회로 이동) 나.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	가.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관련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좌 동
시민혁신 분과위원회	(신설)	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나. 버스 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 현행 “서비스·시설개선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시설개선분과위원회”로 변경됨

3) 시민모니터단 운영 관련(안 제12조)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 경영실태 및 안전운행 실태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시민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의 신설 및 운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있음

동 조례에 시민모니터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운행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제도화 시킬 수 있고,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모니터단이 상위법의 근거 없이 민간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바, 이는 민간업체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고, 위원회에 자문기능을 부여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위원회 회의 관련(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⁴⁾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회의 개최 사유로 포함하고 있고⁵⁾, 회의소집 요구가 없는 위원장의 권한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에 위원장(행정1부시장)의 회의 개최권한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기타 사항

- 기타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2인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1인으로 축소하고 이를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축소하는 것은 부위원장 선임 등 불필요한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을 방

4)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를 검색하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볼 수 있음

5)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회의 개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원장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지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운영 사항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분과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시민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위원회”도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는 것임

답변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일부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결정은 시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는 주로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질의 :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 내용에는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에서도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답변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울시 주요 버스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 버스 정책에 대한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시민모니터단의 기능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바, 시민모니터단의 조사 권한을 점검 기능으로 변경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위원장도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시민모니터단이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점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88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버스 정책에 대한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시민모니터단의 기능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바, 시민모니터단의 조사 권한을 점검 기능으로 변경함

2. 주요 골자

- 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2 및 제2조)
- 나.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위원장도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시민모니터단이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점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둔다.

안 제2조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로 한다.

안 제7조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를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를 “점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u>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u>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u>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u>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u>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둔다.</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u>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u>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둔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u>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u></p> <p>1. ~ 4. (생략)</p> <p><u>5.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u></p> <p>6. ~ 7. (생략)</p> <p><u>8.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u></p> <p>9. (생략)</p>	<p>제2조(위원회의 기능)</p> <p>-----</p> <p>-----</p> <p>-----<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u>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u></p> <p>6. ~ 7. (현행과 같음)</p> <p><u>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u></p> <p>9. (현행과 같음)</p>	<p>제2조(위원회의 기능)</p> <p>-----</p> <p>-----</p> <p>-----<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u>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12. (개정안과 같음)</p>

<p>10.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p> <p>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p> <p>11. (현행과 같음)</p> <p>12. 시내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p>	
<p><u>제7조(위원회 운영) ①</u>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제7조(회의) ①</u></p> <p>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7조(회의) ①</u></p> <p>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u>제12조(시민모니터단) ①</u></p> <p>버스정책 시민위원회에 시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p> <p>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u>조사</u>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덕적 해이, 현금탈루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3.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u>조사</u>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p><u>제12조(시민모니터단) ①</u></p> <p>(개정안과 같음)</p> <p>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u>점검</u>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덕적 해이, 현금탈루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3.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u>점검</u>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둔다.

제2조의 제목“(기능)”을“(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며,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12. 시내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구성)”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40인”을 “1인을 포함한 50인”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을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으로 하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관계 공무원

제4조제1항 중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보직”을 “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총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를 “시설 개선, 경영합리화, 시민혁신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제고 관련 사항

나.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혁신분과위원회

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현장조사 등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나.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선출”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회의)”로 하고, 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를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민모니터단) 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시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도덕적 해이, 현금탈루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3.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u>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u>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u>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u>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둔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u>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u></p> <p>1. ~ 4. (생략)</p> <p><u>5.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u></p> <p>6. ~ 7. (생략)</p> <p><u>8.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u></p> <p>9. (생략)</p> <p><u>10.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u></p> <p>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u></p> <p>6. ~ 7. (현행과 같음)</p> <p><u>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u></p> <p>9. (현행과 같음)</p> <p><u>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u></p> <p>11. (현행과 같음)</p> <p><u>12. 시내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u></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u>2인을 포함한 4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부위원장 <u>1인을 포함한 50인</u> ----- -----.</p>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1. ~ 6. (생략)

7. 시 관련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략)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기타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2. (생략)

3. 서비스·시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
계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략)

②

-----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7.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공
무원-----직-----.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 ① -----
----- 시설 개선, 경영
합리화, 시민혁신 등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시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제고
관련 사항

나.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
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u>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5. 시민혁신분과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u>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현장조사 등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나.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u></p> <p>② ----- -----</p> <p><u>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u></p> <p>② ~ ③ (생략)</p>	<p><u>제7조(회의) ① -----</u></p> <p><u>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u>제12조(시민모니터단) ①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에 시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u></p> <p>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덕적 해이, 현금탈루 등 버스회사 경영 실태 점검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3.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p><u>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3조(운영세칙) -----</u> ----- -----.</p>